

# 『베트남, 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규정 초안』

2026. 3. 13.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36,995,306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위험 수준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 감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초안)
- (적용범위) HS 코드 - 전 제품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 전반)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제품을 저위험(Group 1) 및 중·고위험(Group 2) 수준으로 분류·관리, 부처 산하기관이 중·고위험 제품 목록 작성 및 관리, 제품 관련 정보 규정, 품질 조사 활동 규정 등
- (인증정보) 본 규정은 신규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음
  - (기타사항) 시장 감시 및 사후 품질관리 중심 규정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중심으로 제품 안전 및 리콜 관리 체계 운영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중심으로 제품 품질감독 및 시장 감시 체계 운영
  -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품 안전 제도 및 시장 감시 체계 운영
  - (EU) 제품군별 조화 규정 및 CE 마킹 체계 기반 제품 안전 관리 및 시장 감시 운영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신규 인증 요구는 없으나 제품 정보 관리 및 품질 대응 부담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권고사항)
  - 제품 위험수준 분류 기준 및 관리 대상 품목 모니터링
  - 제품 라벨 및 표시사항 사전 점검
  - 제품정보 및 기술자료 관리체계 정비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제품 정보 관리 요구 증가) 제품 설명, 위험 분석 결과 및 HS 코드 등 제품 정보 관리 부담 증가 가능
- (시장 감시 대응 필요) 무작위 품질 조사 및 라벨 점검 등 시장 감시 대응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정비 필요

##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제품정보 및 라벨 관리체계 정비, 현지 유통사와 협업 대응
  - (중견기업) 제품 위험 수준 분석 및 내부 품질관리 기준 강화
  - (대기업) 글로벌 품질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규제 준수 관리체계 운영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4
III. 관련 인증 정보 .....	8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2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2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14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5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15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6
VI. 대응 방안 .....	17
참고 1 참고자료 .....	18
참고 2 규제원문 번역본 .....	15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	35

##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Management of Product and Goods Quality, Draft Circular, February 2026		
	국문	제품 및 관리 상품 품질, 회람 초안, 2026년 2월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2026.03. 이후	시행현황	제정 초안	
시행(예정)일	2026.07.01.	통보일 (고시일)	2026.02.06.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709,033,00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36,995,306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li> <li>▪ Vietnames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li> </ul>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위험 수준 기반 품질관리 및 시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을 저·중·고위험 3단계로 분류, 중·고위험 제품 목록 관리, 제품 정보 관리 및 품질 조사 규정 제시 등</li> </ul>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 수준 기반 품질관리 및 시장 감시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제품 정보 관리, 라벨 표시 및 품질관리 대응 필요성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li> </ul>			
대응 여부	기업 의견	-		
	대응 방안	-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베트남 정부의 「제품 및 상품 품질법」<sup>1)</sup> 및 2025년 개정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제품·상품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 시행령 제37/2025/NĐ-CP<sup>2)</sup>에 따른 제품·상품 품질관리 규정의 세부 운영 기준을 산업통상부 고시 형태로 규정
  - 제품 및 상품의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체계를 통한 품질관리의 체계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목적
  - 기존 품질관리 규정 제36/2019/TT-BCT<sup>3)</sup> 및 제46/2015/TT-BCT<sup>4)</sup>를 폐지하고 관리 대상 제품·상품 품질관리 체계를 통합 규정

### □ 규제 요지

-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위험 수준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관리 절차를 규정
  - 제품 및 상품의 위험 수준을 저·중·고 3단계로 분류
  - 산업통상부 산하 관리 부서가 중·고위험 제품 목록 작성·관리
  - 목록 작성 시 제품 설명, 위험 분석 결과, HS 코드 등 관련 정보 포함
  - 품질 조사 활동으로 무작위 샘플 시험, 라벨·적합성 표시 확인, 신고 정보와 실제 제품 비교 등을 규정
  - 규정 시행 시 기존 산업통상부 품질관리 규정 제36/2019/TT-BCT 및 제46/2015/TT-BCT 폐지 예정

1)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2) Nghị định số 37/2025/NĐ-CP - Decree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and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3) Thông tư số 36/2019/TT-BCT - Circular on management of product and goods quality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4) Thông tư số 46/2015/TT-BCT - Circular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management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 적용대상

- (HS 코드: 전 제품) 산업통상부 관리 제품 및 상품 전반
  - 본 규제는 관리 범위 내의 제품·상품의 품질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일반 관리 규정에 해당
  - 이에 따라 개별 품목은 위험 기반 분류(Risk-based classification)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제품으로 구분되어 관리
  - 산업통상부의 각 산업 분야별 관리 부서가 관리 대상 제품 목록을 작성하며, 목록에는 제품명, 위험 수준 및 HS 코드 포함
  - 중·고위험 제품을 중심으로 품질검사 및 관리가 수행되도록 규정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본 문서는 현재 산업무역부 통지 제정 초안 단계 문서로 최종 채택 후 시행 예정
  - 시행 시 기존 규정 제36/2019/TT-BCT 및 제46/2015/TT-BCT 폐지
  - 기존 적합성평가 기관은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활동

## 2

## 규제 세부 내용

### □ 규정 비교표

기존 규정 (고시 36호, 46호)	본 규정(고시) 초안
<b>[규정 폐지 및 통합]</b>	
<u>고시 46호 제1조</u> - 본 고시는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의 제조 단계 품질 검사를 규정함	<u>본 고시 초안 제35조 제2항</u> - 본 고시의 발효일부더 다음은 효력을 상실함 a) 산업통상부 관리 제품의 제조 단계 품질 검사를 규정한 2015년 12월 11일자 고시 제46/2015/TT-BCT b) 산업통상부 관리 책임 하의 제품 및 상품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2019년 11월 29일자 고시 제36/2019/TT-BCT
<u>고시 36호 제1조</u> - 본 고시는 산업통상부의 국가 관리 책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관리 활동을 규정함	
<b>[위험 기반 제품 분류 도입]</b>	
<u>고시 36호 제4조</u> -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 및 상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경우 국가 품질관리 대상이 됨	<u>본 고시 초안 제3조 제2항</u> - 제품 및 상품은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a) 고위험 제품: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관리가 없을 경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b) 중위험 제품: 위험 수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제품 c) 저위험 제품: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제한적인 제품
<b>[중·고위험 제품 목록 관리]</b>	
<u>고시 36호 제5조</u> - 산업통상부는 관리 대상 제품 및 상품의 목록을 공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함	<u>본 고시 초안 제4조</u> - 관리 부서는 담당 분야의 제품 및 상품을 검토하여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목록에는 제품명, 위험 수준 및 HS 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기존 규정 (고시 36호, 46호)	본 규정(고시) 초안
<b>[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품질관리]</b>	
<u>고시 36호 제9조</u> - 품질 검사 결과는 관련 관리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보관됨	<u>본 고시 초안 제5조 2항</u> - 업종 및 분야 관리 부서는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검사 결과, 사후 검사 결과, 적합성평가 결과, 위반 경고 등)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공유하여야 함
<b>[전자상거래 제품 품질관리]</b>	
<u>고시 36호, 46호</u>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보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u>본 고시 초안 제12조 1항</u> - 전자상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상의 제품 품질 보증은 정부 시행령 제37/2025/NĐ-CP의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됨
<b>[품질 조사 제도 도입]</b>	
<u>고시 36호, 46호</u> - 위험 분석 또는 정책 참고 목적의 품질 조사 활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u>본 고시 초안 제29조 1항</u> - 품질 조사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위험 분석 및 정책 참고를 위한 시험 및 적합성평가 목적의 무작위 샘플링</li> <li>b) 라벨, 적합성 표시 및 추적성 정보의 검증</li> <li>c) 신고 정보와 실제 유통 제품 간의 비교</li> </ul>

## □ 본 규정 초안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상품 품질법」 및 개정 법률</li> <li>-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 세부 규정」</li> </ul>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부 관리 하의 제품 및 상품과 그 품질관리 활동 전반</li> <li>- 적용 대상 주체는 다음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상품의 제조업자</li> <li>·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li> <li>· 유통 및 판매 사업자</li> <li>·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li> <li>· 시험·인증·검사 등 적합성평가 기관</li> </ul> </li> </ul>
위험 기반 제품 분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상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제품: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관리가 없을 시 인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li> <li>· 중위험 제품: 위해 발생 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며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제품</li> <li>· 저위험 제품: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시장 감시 수준의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li> </ul> </li> <li>- 위험 수준 평가는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및 잠재적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li> </ul>
중·고위험 제품 목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부 산하 각 관리 부서는 담당 분야의 제품을 검토하여 중·고위험 제품 목록을 작성해야 함</li> <li>- 해당 목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명칭</li> <li>· 위험 수준</li> <li>· HS 코드</li> </ul> </li> </ul>
제품 품질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전체 공급망 단계에서 품질관리 의무가 적용됨</li> <li>① 제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는 제품이 적용 기술규정(QCVN) 및 관련 표준을 충족하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li> </ul> </li> <li>② 수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이 기술규정(QCVN) 및 관련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③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 사업자는 판매 제품이 관련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li> </ul> </li> <li>④ 수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제품의 품질관리는 베트남 법령 및 수입국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됨</li> </ul> </li> <li>⑤ 전자상거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도 같은 품질관리 의무 적용</li> </ul> </li> </ul>

구성	주요 내용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품질 관련 정보는 국가 제품·상품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관리됨</li> <li>- 관리기관은 다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결과</li> <li>· 사후 검사 결과</li> <li>· 적합성평가 결과</li> <li>· 위반 및 경고 정보</li> </ul> </li> <li>- 데이터 업데이트는 관련 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li> </ul>
적합성평가 기관 지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인증·검사 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지정 절차를 통해 적합성평가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li> <li>- 지정 심사는 현장 평가 및 문서 검토를 포함</li> <li>- 평가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 수행</li> <li>-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정 신청기관은 지정기관이 요구한 기간 내 시정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li> </ul>
수입 제품 품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품질 검사 체계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li> <li>-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 빈도 강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 발생</li> <li>· 수입자의 과거 위반 이력 존재</li> <li>· 제품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li> </ul>
검사 감면 및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감면 가능</li> <li>-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 간소화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제품의 반복 수입으로 품질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li> <li>· 국제 인증 또는 인정된 시험·평가 결과 보유</li> </ul> </li> </ul>
품질 조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위한 품질 조사 활동 수행</li> <li>- 조사 활동에는 다음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유통 제품의 무작위 샘플링 시험</li> <li>· 제품 라벨 및 적합성 표시 검증</li> <li>· 신고 정보와 실제 제품 간 일치 여부 확인</li> </ul> </li> <li>- 조사 결과는 정책 개선 및 검사 계획 수립에 활용</li> </ul>
전자상거래 제품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도 같은 품질관리 규정 적용</li> <li>-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의무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 제품의 품질 정보 확인</li> <li>· 적합성 인증 정보 검증</li> <li>· 위반 제품 발견 시 판매 중지 조치</li> </ul> </li> </ul>
제품 추적성 및 디지털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관련 정보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가능</li> <li>- 관리기관은 제품 추적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능</li> </ul>
시행 및 경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li> <li>-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 가능</li> <li>-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검사 또는 인증 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라 완료 가능</li> </ul>

### □ 인증 절차

- 위험 기반 제품 분류 및 관리체계 적용
  - 본 규정은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위험 수준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 (저·중·고 3단계)
  - 베트남은 제품 및 상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Group 1(저위험 제품) 및 Group 2(중·고위험 제품)로 구분하여 관리
    - (Group 1 제품) 일반 품질관리 대상 제품으로, 제조·수입업자가 적용 표준을 공표한 후 시장 유통 가능
    - (Group 2 제품) 인체 안전, 환경 또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국가 기술규정(QCVN) 또는 품질 요구사항 준수 필요
- 관리 대상 제품 목록 확인
  - 산업통상부의 관리 대상 제품 목록에는 다음 포함 가능
    - 제품명
    - HS 코드
    - 적용 국가 기술규정(QCVN)
    - 제품 위험 수준
    - 적용 관리 방식
    - 제품 설명 및 위험 분석 관련 정보
  - 해당 목록은 부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정기 또는 필요시 갱신
- 적합성평가 수행
  - Group 2 제품 중 국가 기술규정(QCVN)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적합성평가 수행 가능
    - 지정 시험기관 시험
    - 인증기관 적합성 인증
    - 제조자 적합성 선언(DoC)
  - 구체적인 적합성평가 방식은 제품별 기술규정에서 별도 규정
- 시장 유통 및 적합성 표시
  -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는 제품은 관련 절차 완료 후 시장 유통 가능
  - 기술규정 적용 제품은 CR 마크(Conformity Mark) 표시 요구

## □ 사후관리

### ○ 시장 감시 및 품질 검사

- 산업통상부 및 유관 감독기관은 시장 유통 제품 사후관리 수행
  - 시장 샘플링 검사
  - 제품 시험 및 품질 검증
  - 기술규정 적합성 여부 확인
  - 제품 라벨 및 적합성 표시 확인
  - 신고·등록된 제품정보와 실제 유통 제품 간 일치 여부 점검

### ○ 정기 및 수시 검사

- 감독기관은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제품 품질 점검 가능
- 다음의 경우 수시 검사 실시 가능
  - 소비자 불만 또는 사고 발생
  - 제품 안전 관련 위험 징후 발견
  - 시장 감독 과정에서 위반 의심 사례 확인

### ○ 부적합 제품 조치

- 검사 결과 기술규정 또는 적용 표준 미충족 시 다음 조치 가능
  - 제품 판매 중지
  - 제품 회수
  - 시장 철수
  - 행정 벌금 부과

### ○ 제조·수입업자 책임

- 제조·수입업자는 시장 유통 제품의 품질 지속 관리 필요
- 제품 결함 발견 시 관할 관리기관 보고 후 시정 조치 수행

## □ 표시사항

### ○ 제품 라벨 표시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제품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 정보 포함 필요
  - 제품명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해당 시)
  - 사용 방법 및 경고 문구
- 표시 정보는 베트남어 표시 원칙 적용

### ○ 적합성 마크 표시

- 국가 기술규정 적용 제품의 경우 CR 마크\* 표시 필요
- \* CR 마크는 해당 제품이 베트남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의미함

### ○ 제품 식별 및 추적 정보

-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 정보 표시 가능
  - 제품 모델명
  -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
  - 바코드 또는 QR 코드 등 식별정보
  - 제품 추적성 확보를 위한 식별정보(제품 코드, 생산 배치 정보 등)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인증 유효기간)

-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술규정 및 인증 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3년 범위에서 설정 혹은 인증 방식에 따라 별도 규정

### ○ (인증비용)

- 시험 비용, 인증기관 심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제품별로 상이

### ○ (서류 보존기간)

- 제조·수입업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문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보관해야 함

### ○ (변경사항 발생 시)

- 제품 설계, 원자재, 제조 공정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발생 시 인증기관 또는 관할 관리기관에 통보 후 재평가 요구 가능

### ○ (위반 시 제재)

- 규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 가능
  - 제품 판매금지
  - 제품 회수 및 시장 철수
  - 인증 취소
  - 행정 벌금 부과

## □ 적합성평가 기관

### ○ 지정 인증기관

- 베트남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인증기관을 지정
- 해당 기관은 국가 인정 제도에 따라 기술 역량 검증 필요
  - QUATEST, QUACERT, Vinacontrol, SGS, Intertek, TÜV Rheinland 등

## 4

#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 미국

- (현행 규정) 소비자 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 중심의 규제 운영
  - 「소비자제품안전법<sup>1)</sup>」에 따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제품 안전 규제 및 리콜 감독 수행
  - 제품별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sup>2)</sup>」, 「연방무역위원회법<sup>3)</sup>」 등 법령 개별 적용
- (도입동향) 위험 기반 수입제품 검사 및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 관리 강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전기·전자 제품은 복수 규제 적용 구조
  - 전기제품은 UL 등 민간 안전인증, 무선 기능 제품은 FCC 전자파 규제 적용

### 2

#### 중국

- (현행 규정) 강제 인증 중심의 제품 품질관리 체계 운영
  - 「제품품질법<sup>4)</sup>」 기반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품질 감독
  - 일부 제품은 CCC<sup>5)</sup> 인증 취득 후 시장 유통 가능
- (도입동향) 품질 감독 디지털화 및 온라인 시장 관리 강화 추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GB 국가표준 기반 기술기준 운영 및 IEC 기준 반영 확대

1)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2) 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3) FTC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4) 产品质量法

5)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3

## 일본

- (현행 규정) 제품 위험도 기반 제품군별 안전 규제 체계 운영
  -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법<sup>1)</sup>」에 따라 PSE 표시 의무 적용
  - 특정 전기용품은 제3자 인증, 기타 제품은 제조자 적합성 선언 적용
  - 소비재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sup>2)</sup>」에 따라 PSC 표시 의무 적용
- (도입동향) 제품 안전 관리 및 리콜 관리 체계 강화 정책 추진
  - 리콜 정보 공개 및 소비자 경고 시스템 확대, 온라인 판매 제품의 안전 관리 협력 체계 강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 ISO·IEC 기반 표준을 일본 산업규격(JIS)에 반영

### 4

## EU

- (현행 규정) 통합 제품 안전 규제 체계 운영
  - 2024년 12월 13일부터 「일반제품 안전규정<sup>3)</sup>」 전면 시행
  - 제조·수입업자는 EU 적합성 선언(DoC) 및 기술문서 작성 의무 부담
- (도입동향) 제품 안전 규제의 디지털화 및 공급망 책임 강화 추진
  - 온라인상 위해 제품 제거 의무 강화, 제품 추적성 확보를 위한 경제 운영자 표시 의무 확대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제품군별 조화 규정 기반 기술규제 적용
  - 전기·전자제품은 「저전압지침<sup>4)</sup>」 및 「전자파적합성지침<sup>5)</sup>」 적용
  -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sup>6)</sup>」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sup>7)</sup>」 적용
  - 대부분 소비재 제품은 CE 마킹 기반 시장 접근 체계로 관리

1) 電気用品安全法 (DENAN,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2)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3) Regulation (EU) 2023/988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4) Directive 2014/35/EU (Low Voltage Directive, LVD)

5) Directive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EMC Directive)

6) Regulation (EU) 2017/745 (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7) Regulation (EU) 2017/746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IVDR)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EU
상위 법·프레임	소비자제품안전법 기반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 체계	제품품질법 기반 제품 품질관리 체계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일반제품안전규정 및 제품군별 규정 기반 제품안전 규제
규제 체계 성격	제품군별 개별 법령 기반 분산 규제 체계	강제 인증 중심 사전 규제 체계	제품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체계	EU 단일 규정 기반 통합 규제 체계
주요 규제기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경제산업성(METI), 소비자청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시장감시기관
제품 안전관리 방식	안전기준 준수 및 시장 감시·리콜 중심 관리	CCC 인증 기반 시장 유통 관리	PSE-PSC 등 표시 및 적합성 확인	CE 마킹 기반 시장 접근
제품 규제	제품군별 개별 법령 및 안전기준 적용, 시험기관 기반 안전 인증 활용	CCC 인증 및 GB 국가표준 적용	제품군별 안전 규제 (전기제품 PSE 표시, 소비재 PSC 표시)	제품군별 조화 규정
기술기준 체계	ASTM 등 민간 표준 및 연방 규정	국가표준(GB) 중심	일본산업규격(JIS)	조화규격(EN/IEC)
적합성평가 방식	제조사·수입자 적합성 선언(SDoC) 및 제3자 시험 인증	CCC 인증 및 형식시험	제3자 인증 또는 제조사 적합성 선언	EU 적합성 선언(DoC)
인증·마크	법적 통합 인증마크 없음	CCC 마크	PSE 마크	CE 마크
온라인 유통 관리	플랫폼 제품 안전 책임 논의 확대	플랫폼 품질 책임 강화	온라인 판매 제품 안전 관리 강화	온라인 위해제품 제거 의무
사후관리	시장감시 및 리콜 제도 운영	시장 감독 및 리콜 제도	사고보고 및 리콜 제도	Safety Gate 기반 시장감시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제품 및 관리 상품 품질, 회람 초안, 2026년 2월
관리기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법적근거	베트남 「제품 및 상품 품질법」 및 관련 시장 감시, 제품 품질관리 하위 법령 체계
통보문서	-
주요목적	위험 수준 기반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시장 감시 절차 명확화

###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위험수준 분류	제품을 저·중·고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리
제품 목록 관리	산업통상부 산하 관리기관이 중·고위험 제품 목록 작성 및 관리
품질 조사	무작위 샘플 시험, 라벨 및 적합성 표시 확인 등 시장 감시
정보 관리	제품 설명, 위험 분석 결과, HS 코드 등 제품 관련 정보 관리

###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시장 유통 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정당함
비차별성	규정상 내·외국 제품 구분 없이 동일 기준 적용 구조
최소무역제한성	사전 인증이나 시험 의무가 아닌 시장 감시 중심 관리체계로 무역 제한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
투명성	규정 초안 단계에서 공개 검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본 규정은 제품 위험 수준 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성격에 해당
  - 신규 인증 또는 시험 제도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 기술규정(QCVN)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
- (권고사항) ①제품 위험도 분류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②제품 라벨 및 표시사항 사전 점검 체계 구축 검토, ③무작위 품질조사 대응을 위한 내부 품질관리 절차 정비, ④제품 설명 및 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정은 제품 위험 수준 기반 관리체계 및 시장 감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베트남 국내·외 제품에 대한 차별 적용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 신규 인증 또는 시험 요구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구조로, 무역 제한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6

## 대응 방안

### □ 대응 방안

####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제품 정보 관리 및 표시 대응 역량 확보	① 제품 위험도 분류 기준 검토, 제품군별 품질 및 표시 관리체계 구축 ② 제품 라벨 및 표시사항 사전 점검 절차 마련 ③ 현지 유통사 및 수입업자를 통한 시장 감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중견 기업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① 제품별 위험 수준 분석 및 내부 품질관리 기준 정비 ② 제품 설명, HS 코드, 기술자료 등 정보 관리 체계 구축 ③ 무작위 품질조사 대응을 위한 내부 시험 및 품질관리 절차 강화
대기업	시장 감시 대응 및 통합 컴플라이언스 구축	① 글로벌 품질관리 시스템과 현지 규정 연계 운영 ② 시장 감시 및 품질조사 대응 전담 조직 운영 ③ 규제 변화 모니터링 및 공급망 품질관리 체계 통합 관리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참고자료**□ **참고자료**

연번	국문명	영문명
1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제05/2007/QH12호 (2007.11.21)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No. 05/2007/QH12 dated 21 November 2007
2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일부 개정법 (2025.06.18)	Law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dated 18 June 2025
3	산업통상부의 기능·임무·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40/2025/ND-CP호	Decree No. 40/2025/ND-CP on the Functions, Duties, Power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4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 세부 규정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37/2025/ND-CP호	Decree No. 37/2025/ND-CP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5	산업통상부 소관 제조 단계 제품 품질 검사에 관한 고시 제46/2015/TT-BCT호	Circular No. 46/2015/TT-BCT on Quality Inspection of Products in Producti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6	산업통상부 소관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2019/TT-BCT호	Circular No. 36/2019/TT-BCT on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s and Good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2026/TT-BCT  
하노이, 2026년 월 일

2차 초안

### **통지(Thông tư)**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에 속하는 제품·상품의 품질관리 규정**

2007년 11월 21일 제정된 제품·상품 품질법(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에 근거하고,

2025년 6월 18일 제정된 제품·상품 품질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법에 근거하며,

2025년 2월 29일 정부령 제40/2025/NĐ-CP(산업무역부의 기능·임무·권한 및 조직구조 규정)에 근거하고,

2026년 1월 23일 정부령 제37/2025/NĐ-CP(제품·상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조치 규정)에 근거하며,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Cục Đổi mới sáng tạo, Chuyển đổi xanh và Khuyến công) 국장의 제안에 따라,

산업무역부 장관은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에 속하는 제품·상품의 품질관리 규정에 관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제1장 일반 규정

## 제1조. 적용 범위

본 통지는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호 제94조에 규정된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상품의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1. 산업무역부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2. 산업무역부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상품을 생산·사업·수입·수출하는 조직 및 개인
3. 산업무역부 관리 책임 범위의 제품·상품 품질 적합성평가 활동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고 참여 의사가 있는 적합성평가기관

## 제3조. 제품·상품 위험수준 결정의 원칙 및 방법

### 1. 위험수준 결정 원칙

제품·상품의 위험수준 결정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 a) 과학적 증거 및 실제 적용 데이터에 근거할 것
- b) 각 시기별 국가관리기관의 관리 역량을 고려할 것
- c)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제품·상품 품질관리 원칙을 계승할 것
- d) 비례 원칙을 보장하여 국가관리 요구가 위험수준에 상응하도록 할 것
- d) 인간의 건강·생명, 환경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 원칙을 적용할 것

### 2. 위험 분류

제품·상품은 다음 세 가지 위험수준으로 분류된다.

- a) 고위험군
  - 위험의 유해성이 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상품
  - 적절한 관리조치가 없는 경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b) 중위험군
  - 위험의 유해성 또는 발생 가능성이 중간 수준인 제품·상품
  - 적절한 관리조치가 없는 경우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c) 저위험군
  - 위험의 유해성이 낮거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제품·상품

- 통상적인 관리 또는 사용 조건에서 중대한 영향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음

### 3. 위험수준 결정 방법

제품·상품 위험수준 결정 방법은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호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제4조. 위험수준별 제품·상품 목록 작성

### 1. 목록 작성

본 통지에서 규정한 위험수준 결정 원칙·방법 및 절차에 근거하여 각 단위의 장은 다음 책임을 가진다.

- a)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상품의 위험수준을 검토·평가한다.
- b)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을 작성한다.

- 베트남 수출입 상품목록에 부합하는 HS 코드
- 해당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품질관리 요구사항

각 단위는 매년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목록을 검토·갱신·보완한다.

- 실제 관리 상황
-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등장
- 국내 및 국제 제품·상품 위험 경보

이 과정에서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공개성
- 투명성
- 법령 규정과의 부합성

- c)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과 관련 작성 서류를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 d)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상품에 대해 적절한 로드맵에 따라 국가기술규정(QCVN)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보완한다.

이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규정의 일관성
- 관련 이해관계자의 적용 편의성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제정은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 2. 위험수준 결정 시 요구사항

각 단위가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을 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위험관리의 조정·감독 및 통일적 관리가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될 것

b) 각 제품·상품에 대해

- 각 위험요소별 위험평가 수행
- 가장 높은 위험점수를 가진 위험요소를 선택하여 해당 제품·상품의 위험수준 평가 근거로 활용

### 3.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 제정 서류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a) 제품·상품을 관리 목록에 포함시키는 이유 설명서

- 과학적 근거
- 실제 적용 근거
- 국제적 경험

b) 위험평가 보고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제품·상품 설명 및 사용 범위
- 관련 조직·개인, 산업협회, 과학기술기관의 자문 의견
- 위험요소 분석
- 영향 및 영향계수 분석
- 제품·상품 위험수준 결정
- 권한기관 및 국제기구의 위험 경보 정보
- 위험수준 분류 및 관리조치 권고

### 4.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의 책임

a)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건의하고 공표를 지원한다.

b) 위험 결정 및 위험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중복 없이 통일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갱신 및 공유 메커니즘

### 1.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의 책임

산업무역부의 중앙 담당 기관으로서 다음 책임을 수행한다.

- 산업무역부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 정보 및 데이터를 국가 표준·측정·품질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및 공유
- 국가 품질 인프라(NQI) 구성요소 구축 및 이행 상황을 보고

### 2. 분야별 관리 부서의 책임

a) 다음 정보를 국가 표준·측정·품질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및 공유한다.

-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관련 정보
- 검사 결과
- 감독 결과
- 사후관리(유통 후 검사, hậu kiểm)
- 적합성평가 결과
- 위반 제품·상품 관련 데이터 및 경보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분기별 정기 업데이트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5일 이전)
- 긴급 경보 또는 요청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b) 다음 활동에 데이터 활용

-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 작성
- 시장 감독 및 검사

### 3. 국가비밀 관련 제품·상품

국가비밀을 포함하는 제품·상품의 경우 다음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검사 결과 보고
- 감독 결과 보고
- 유통 후 검사 결과 보고

## 제6조. 제품·상품 품질 검사기관

1. 산업무역부의 제품·상품 품질 검사기관은 각 산업·분야 관리국(Cục) 및 부서(Vụ)이다.

2. 책임

a) 기능과 임무에 따라 제품·상품 품질 검사 및 감독 수행

- 객관성 확보
- 투명성 확보
- 합법적인 생산·경영 활동 방해 금지

b) 검사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업데이트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며 위반 처리 시 관련 기관과 협력

c) 검사 결과, 결론 및 처리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

## 제7조. 제품·상품 품질 검사 책임 분담

1. 산업무역부 품질 검사기관은 다음 단계의 제품·상품에 대해 검사 조직을 수행한다.

- 생산 단계
- 수출 단계

- 수입 단계
- 시장 유통 단계

검사는 다음 원칙에 기반하여 수행된다.

- 위험 기반 관리
- 객관성
- 투명성
- 합법적 생산·경영 활동 방해 금지

2. 품질 검사기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 계획 검사 또는 수시 검사 실시
- 권한 범위 내 위반 처리
- 검사 결과 및 처리 결정에 대해 법률 및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책임

3. 제품·상품 품질 검사는 다음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전문 검사기관
- 세관기관
- 시장관리기관
- 공안기관
- 기타 기능기관

검사 결과 및 위험 경보 정보는 다음 시스템에 업데이트 및 공유되어야 한다.

- 국가 표준·측정·품질 데이터베이스
- 관련 전문 시스템

4.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은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제품·상품 품질 검사기관 간 협력 규정 수립
- 이를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함

## 제2장 제품·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관리

### 제1절 제품·상품 품질 보장

#### 제9조. 국내 시장 출시 전 생산 단계에서의 제품 품질 보장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의 제품 품질 보장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1절 제66조
- 행정위반 처리법
- 기타 관련 법령 규정

#### 제10조. 시장 출시 전 수입상품 품질 보장

시장에 출시되기 전 수입상품의 품질 보장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1절 제68조
- 행정위반 처리법
- 기타 관련 법령 규정

#### 제11조. 시장 유통 상품의 품질 보장

시장 유통 상품의 품질 보장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1절 제69조
- 행정위반 처리법
- 기타 관련 법령 규정

#### 제12조. 전자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보장

1. 전자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보장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1절 제70조
- 행정위반 처리법
- 기타 관련 법령 규정

2.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Cục Thương mại Điện tử và Kinh tế số)은 다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7장 제94조 제2항 g목

### **제13조. 수출상품 품질관리**

1. 수출상품의 품질관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품·상품 품질법 제3장 제3절
  - 제품·상품 품질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
2. 수출입국(Cục Xuất nhập khẩu)은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책임을 가진다.

## **제2절**

### **국가관리 수행을 위한 적합성평가**

#### **제14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조건**

적합성평가기관의 조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2절 제72조

#### **제15조. 지정 신청 서류**

##### **1. 서류 접수 기관**

- 산업무역부 소속 산업·분야 관리 부서

##### **2. 서류 구성**

지정 신청 서류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2절 제73조

#### **제16조. 서류 제출 방식**

적합성평가기관, 검사확인기관 및 사용가치 확인기관이 특정 분야의 국가관리 수행을 위한 다음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

- 시험
- 인증
- 검사확인
- 사용가치 확인

지정 신청 서류 1부를 작성하여 다음 방식으로 제출한다.

-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을 통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방식

(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정절차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인프

라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다음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직접 제출
- 우편 서비스 제출

### 제17조. 지정 절차

1.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절차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2절 제75조

2. 적합성평가기관 평가단

a) 실제 평가 내용에 따라 평가단은 최소 5명으로 구성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평가단장 1명 (산업·분야 관리국 또는 부서 지도부 대표)
- 부단장 1명 (산업·분야 관리국 또는 부서 대표)
- 서기 1명 (산업·분야 관리국 또는 부서 전문관)
- 전문가 2명 (산업무역부 소속 기관 대표 또는 외부 독립 전문가)

평가단장이 부재한 경우 부단장이 평가 활동을 대행할 수 있다.

외부 독립 전문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지정 신청한 적합성평가기관 유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b)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현장 역량평가는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평가 종료 후 평가단은 다음 문서를 작성한다.

- 평가 기록서(부속서 양식 제01호)

현장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적합성평가기관은 3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조치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지정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요청하고 시정 완료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 보고 제출 기한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c) 현장 평가 내용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2절 제75조 제1항 c목

d) 전문가 또는 평가단의 평가 활동 비용은 지정 신청한 적합성평가기관이 부담한다.

### 3. 지정 거부

지정 거부 시 산업무역부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지정 신청 서류의 부적합 통지 양식은 다음 문서를 따른다.

- 부속서 양식 제02호

### 제18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결정의 취소

1. 지정 결정 취소 기관

산업무역부 소속 산업·분야 관리 부서

(지정 결정을 발급한 기관)

2.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결정 취소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2절 제76조

### 제3절

## 제품·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및 시장 유통 상품 품질조사

### 제19조. 생산 단계 제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1. 생산 단계 제품·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이하 "생산 단계 품질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79조

2. 매년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생산 단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 제공

- 계획을 종합하여 산업무역부 지도부에 제출

검사 계획은 제품·상품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3. 각 산업·분야 관리 부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생산 단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 제품·상품 위험수준

- 국가 표준·측정·품질 데이터베이스 정보

- 정부령 제37/2026/NĐ-CP 제79조 제2항 규정

수립된 계획은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에 제출하여 종합한다.

### 제20조. 검사단의 설치 및 활동

검사단의 설치 및 활동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0조

### 제21조. 생산 단계 품질검사 절차 및 위반 처리

생산 단계 제품·상품 품질검사 과정의 절차 및 위반 처리 방식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1조

### 제22조. 수입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수입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2조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3조

### **제23조. 수입상품 품질검사 빈도 강화**

1.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상품은 강화 검사 조치를 적용한다.

- 제품·상품 품질법 제34조 제4항
- 2025년 법률 제78/2025/QH15 제1조 제19항 개정 규정

강화 검사 조치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4조 제1항

2. 산업무역부 검사기관(각 산업·분야 관리국 및 부서)은 다음 책임을 가진다.

a) 다음 정보를 추적·종합·갱신·공표한다.

- 수입상품 품질 위험수준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 목록  
공표 위치

- 국가 단일창구 포털

- 또는 전문 정보시스템

b) 다음 정보를 수집·관리·갱신한다.

- 수입 조직·개인의 규정 준수 이력

이는 품질검사 위험분류에 활용된다.

c) 본 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상품 검사 빈도 강화 조치를 수행한다.

d) 다음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 목록을 결정·공표·갱신한다.

- 검사 간소화 제도 적용이 중단되는 조직 및 개인 목록  
해당 정보는 국가 제품·상품 품질감시 시스템에 반영된다.

전문 정보시스템 또는 국가 단일창구 포털을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시스템은 국가 제품·상품 품질감시 시스템과 자동 데이터 연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는 일관성 유지 및 중복 방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24조. 고위험 수입상품 품질검사 과정의 위반 처리**

고위험 수입상품 품질검사 과정에서의 위반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5조

### **제25조. 고위험 수입상품 품질검사의 면제·감경 및 중위험 수입상품의 적합성 선언 재 실시 면제**

다음 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고위험 수입상품 품질검사 면제 또는 감경
- 중위험 수입상품 적합성 선언 재 실시 면제

적용 규정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6조

### **제26조. 수출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및 위반 처리**

수출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 및 위반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7조

### **제27조. 시장 유통 상품 품질검사**

시장 유통 상품 품질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8조

### **제28조. 시장 유통 상품 품질검사 절차 및 위반 처리**

시장 유통 상품 품질검사 과정의 절차 및 위반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89조

### **제29조. 제품·상품 품질 조사**

1. 제품·상품 품질 조사 활동 내용

a) 제품·상품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 시험
- 적합성평가

이는 참고 및 위험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직접적인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 다만 다음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검사
- 사후검사 실시 건의

b) 다음 정보를 확인 및 대조한다.

- 상품 라벨
- 표준적합 표시
- 규정적합 표시
- 바코드
- 추적가능성 정보

c) 공표된 적용 기준과 실제 유통 제품·상품 간 정보를 비교한다.

2. 조사 결과 다음 징후가 발견된 경우

- 공표된 적용 표준 또는 기술규정 미준수
- 안전 위험 가능성
- 법령 위반 가능성

조사 수행 기관은 다음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조사 결과 및 관련 서류를 품질검사기관에 전달
- 품질검사기관은 다음 조치를 결정한다.

- 검사 실시
- 사후검사 실시

### 3. 산업·분야 관리 부서의 책임

a) 관리 범위 제품·상품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품질조사 실시

b)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목적에 활용

- 위험 경보
- 위반 예방
- 품질관리 정책 개선

c) 조사 데이터를 다음 기관과 공유

- 제품·상품 품질검사기관
- 관련 국가관리기관

공유 방식

- 국가 표준·측정·품질 데이터베이스

4. 고위험 제품·상품의 경우 검사기관은 다음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 정기 조사
- 수시 조사

조사단을 통해 다음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생산시설
- 창고
- 판매 지점
- 기타 관리 필요 장소

이는 검사 강화 목적이다.

### 제30조. 조사단

조사단 관련 내용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37/2026/NĐ-CP 제6장 제3절 제92조

## 제3장

###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 제31조 산업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의 국가관리 책임

1.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자문하여, 산업무역부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a) 산업무역부의 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규정을 규정하는 통지를 제정한다.
  - b)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중간 위험 수준 및 고위험 수준 제품·상품 목록을 제정한다.
  - c)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 계획을 제정한다.
2. 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 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산업무역부 지도부에 보고한다.
3. 배정된 분야에 따라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를 총괄 수행한다.
4. 산업 분야별 관리국·국(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5. 과학기술부 및 기타 부처·지방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 수행을 위한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6. 본 통지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점검하는 책임을 진다.
7. 그 밖에 배정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제32조 산업 분야별 관리국·부서의 국가관리 책임

1. 배정된 기능 및 임무에 부합하도록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 규범 문서의 시행을 조직한다.
2. 관리가 필요한 중간 위험 수준 및 고위험 수준 제품·상품 목록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베트남 수출입 품목 목록(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ệt Nam)에 부합하는 HS 코드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산업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여 종합 후 산업무역부 지도부에 상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3. 배정된 관리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 요구에 활용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활동을 관리한다. 또한 해당 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결정의 취소를 수행한다.
4.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국가관리를 수행한다.
  - 생산
  - 수출
  - 수입
  - 시장 유통
5.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감독하며,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한다.
  - 민원 및 신고 처리
  -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처리
6. 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현황을 추적·통계·종합하며,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 법령 홍보 및 보급
  - 법령 이행 지도
  - 생산·경영 조직 및 개인이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정보를 이해하도록 지원
7. 매년 배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 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에 제출하여 종합하도록 한다.
  8. 산업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과 협력하여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9. 그 밖에 배정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제33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의 국가관리 책임**

1. 본 통지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자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한다.
2.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기능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을 수행한다.
  - 표준 및 계량 관련 데이터
  - 제품 디지털 여권 정보 신고
 위 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며, 해당 시스템이 국가 데이터 베이스와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그 밖에 배정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제34조 국내시장 관리·발전국의 국가관리 책임**

1.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추적성)에 관한 통지를 제정한다.
2.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한다.

## **제4장 시행 규정**

### **제35조 시행 효력**

1. 본 통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다음 통지는 본 통지의 시행일부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a) 2015년 12월 11일자 통지 제46/2015/TT-BCT  
산업무역부 관리 범위 내 생산 단계 제품 품질검사 규정
  - b) 2019년 11월 29일자 통지 제36/2019/TT-BCT

**제36조 경과 규정**

1. 산업무역부로부터 국가관리 목적의 적합성평가 활동 수행 지정결정을 이미 부여받은 적합성평가기관은 본 통지 시행일부터 해당 지정결정의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적합성평가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본 통지가 시행되기 이전에 적합성평가 활동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는 접수 당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한다.
3. 본 통지에서 인용된 법령 규범 문서 또는 표준이 개정·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개정·보완 또는 대체된 문서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37조 시행 책임**

1. 산업무역부 소속 각 단위, 산업무역부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을 생산·경영·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그리고 적합성평가기관은 본 통지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조직·개인은 이를 산업혁신·녹색전환 및 산업진흥국(산업무역부)에 즉시 보고하여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개정 또는 보완 지침을 제안하도록 한다.

**부속서  
서식**

(산업무역부 장관의 통지 제 .../2025/TT-BCT ...년 ...월 ...일자에 따라 공포)

- 서식 01      제품·상품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기록서
- 서식 02      적합성평가 활동 지정 신청서 부적합 통지서
- 서식 03      지정 신청서 검토표

**서식 01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기록서**

(제품 및 상품)

(산업무역부 장관의 통지 제 /2019/TT-BCT, 2019년 ○월 ○일자에 첨부하여 공포)

산업무역부  
평가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20...년 ...월 ...일

**평가 기록서**  
**제품·상품 적합성평가기관**

**제1부 일반 정보**

**1. 임무 명칭**

산업무역부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량 평가

## 2. 법적 근거

산업무역부 장관의 2025년 ...월 ...일자 통지 제 .../2025/TT-BCT  
산업무역부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규정<sup>1</sup>  
산업무역부 장관의 2025년 ...월 ...일자 통지 제 .../2025/TT-BCT  
제품·상품 목록 규정<sup>2</sup>  
산업무역부 장관의 20...년 ...월 ...일자 결정 제 .../QĐ-BCT  
...에 대한 역량 평가단 구성에 관한 결정<sup>3</sup>

## 3. 적합성평가 활동 참여 기관

기관명: .....<sup>3</sup>

주소: .....<sup>4</sup>

전화: .....

팩스: .....

이메일: .....

## 4. 평가 일정 및 장소

일정: .....년 ...월 ...일

장소: .....<sup>5</sup>

## 5. 등록 분야

- 시험 (Thử nghiệm)
- 검사 (Giám định)
- 인증 (Chứng nhận)
- 검정 / 검사검정 (Kiểm định)

## 6. 평가 유형

- 최초 평가
- 재평가
- 범위 확대 평가

## 7. 평가단 구성

순번	성명	직위	전문 분야
1		평가단장	
2		부단장	
3		구성원	
4		구성원	
5		간사	

불참: ...

## 8. 적합성평가기관 참석자

순번	성명	직위
1		
2		
3		
4		

## 제2부 업무 내용

### 1. 평가단의 업무 내용

- 평가단 간사가 ...의 실제 역량 평가단 구성 결정문을 낭독한다.
- 실제 역량 평가단장이 업무 진행을 주재하고 업무 프로그램 및 방법을 승인한다.
- 적합성평가기관 대표가 참석자 구성 및 기관의 역량을 소개한다.

평가 대상 제품 및 상품:

순번	제품명	기술 규정	수행 등록 여부
1			
2			

### 2.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

#### 2.1 등록 서류

- 평가단 구성원은 등록 신청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서류는 본 기록서에 첨부된 목록에 정리되어 있다.

#### 결론

- 적합
- 부적합
- 보완 필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부적합 사유:

.....  
.....

#### 2.2 지정 신청 분야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적합성평가기관 대표는 평가 시점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현황을 보고하였다.

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다.

- 등록된 제품·상품 관련 수행 서류
- 서류 건수
- 수행 절차
- 수행 결과

**결론**

- 적합
- 부적합
- 보완 필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부적합 사유:

.....  
 .....

**2.3 수행 절차**

- 평가 절차는 본 기록서 첨부 목록에 정리되어 있다.

**결론**

- 적합
- 부적합
- 보완 필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부적합 사유:

.....  
 .....

**2.4 인력**

**2.4.1 서류 검토**

- 인력 수: ...  
 적합성평가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서류를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 전문 분야
- 부여된 임무
- 근무 기간

**서류 검토 결과**

- 적합
- 부적합
- 보완 필요

## 2.4.2 현장 확인

인력 역량의 실제 평가를 위해 서류에 기재된 직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역량을 현장 점검하였다.

순번	직원명	담당 임무	평가 내용	평가 결과
----	-----	-------	-------	-------

### 현장 점검 결과

- 적합
- 부적합

## 2.4.3 인력에 대한 종합 결론

### 인력 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 보완 필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부적합 사유:

.....

인력 관련 종합 사항은 본 기록서 첨부 목록에 정리되어 있다.

## 2.5 장비

- 장비 수량: ...
- 작동 상태 및 검정 여부: ...

장비 관련 종합 사항은 본 기록서 첨부 목록에 정리되어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문서, 절차, 장비 및 인력 목록은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참조: 2019년 11월 29일자 통지 제36/2019/TT-BCT 부속서 III 서식 제03호)

## 제3부 종합 결론

.....

본 기록서는 2부 작성되며,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두 문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평가 대상 기관 대표  
(서명 및 직인)

평가단장  
(서명 및 성명 기재)

평가단 구성원

- 1 본 통지
- 2 제품·상품 목록 규정 통지
- 3 지정 신청 기관명
- 4 사업자등록상 주소
- 5 실제 평가 수행 장소